

의안번호	제 25/ 호
의결.년월일	1993. 12. 23.
의결사항	가결

발의자	조강천 의원외 3인
제출 년월일	1993. 12. 18.

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수정동의(안)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(안) 수정동의(안)

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
조례안에 대하여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
동의안을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원안과 수정안 비교표 1부. 끝.

발 의 자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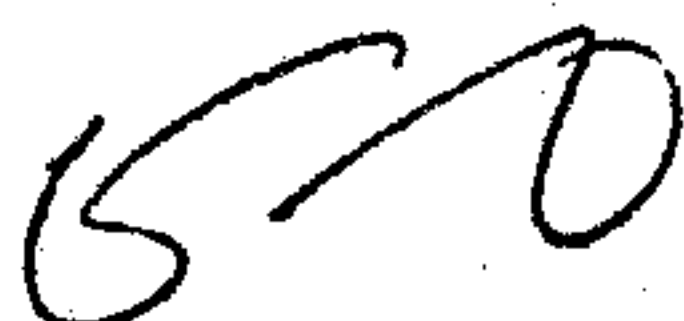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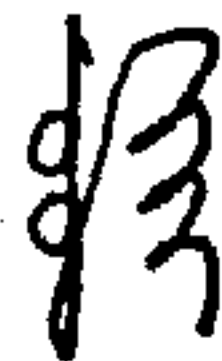
조 강 제(원)

(찬 성 의 원 서 명 : 붙 임 참 조)

원안과 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 3 조 (용자대상사업) 1. 생산소득사업 가. 경제작물 : <u>고등채소, 인삼, 약초, 유실수</u> 나. 잠업 : <u>잠실건립, 상전조성</u> 다. 축산 : <u>한우입식, 육우, 양돈, 양, 양계등</u> 라. 수산 : <u>양어장, 양식어업, 수산시설등</u> 마. 양묘 바. 꿀벌 사.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.	제 3 조 (용자대상사업) 1. ----- 가. 경제작물 : <u>삭제</u> 나. 잠업 : <u>삭제</u> 다. 축산 : <u>삭제</u> 라. 수산 : <u>삭제</u> 마. ----- 바. ----- 사. -----
제 5 조 (용자한도및 이율) ① 용자한도액은 <u>마을당 3000만원</u> <u>가구당 500만원 이내로</u> ----- -----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<u>년3%이내로</u> 한다.	제 5 조 (용자한도및 이율) ① 용자한도액은 <u>마을당 5000만원</u> <u>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</u> ----- -----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<u>년3%로</u> 한다.
제 8 조 (용자금의 상환) ① 생략 ② ----- <u>일반 금융기관의</u> -----	제 8 조 (용자금의 상환) ① 생략 ② ----- <u>농협 보은군지부의</u> -----
제 17 조 (가산금및 독촉) ① ----- ----- <u>시중은행</u> ----- -----	제 17 조 (가산금및 독촉) ① ----- ----- <u>농협 보은군지부</u> ----- -----
제 21 조 (1면1특화사업자금용자특례) ① 생략 ② 생략 ③ ----- <u>4천5백만원</u> -----	제 21 조 (1면1특화사업자금용자특례) ① 생략 ② 생략 ③ ----- <u>1억원미만</u> -----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이영복		
서병기		
박해중	